대주정공 회사표준(대외비)

제 정 일 자	2021.09.01
개 정 일 자	2022.01.27
개 정 일 자	2025.05.15
개 정 일 자	2025.07.02
개 정 일 자	
총 페이지 수	57 페이지(표지포함)

안전보건관리규정

담 당	검 토	승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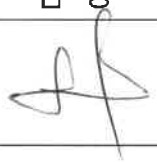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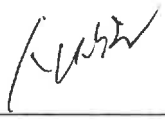	

대주·KC 대주정공

제 1 장 총 칙

제 1 조(목적)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 25 조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 처벌법"이라 한다)에 따라 대주정공(주) 임직원, 관계수급인(근로자를 포함한다)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하며, 안전관리에 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적용범위)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업무는 법령이나 타 규정에서 정함이 없는 한 각 부서에 소속된 전 근로자(파견근무자 포함), 하도급업체 근로자에게도 적용된다.

제 3 조(용어의 정의)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임직원"이란 대주정공의 임원, 관리직, 계약직, 기간제 근로자 등을 말한다.
2.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 2 조제 1 항제 1 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3. "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말한다.
가. 대주정공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안전조치 의무를 지는 사업장
나. 대주정공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관리주체로서 관리하는 시설
다. 대주정공이 도급인과의 계약에 따라 장비가 투입되어 있는 시설
4. "도급"이란 명칭과 관계없이 물건의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을 말한다.
5. "도급인"이란 물건의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도급하는 사업주를 말한다.
6. "수급인"이란 도급인으로부터 물건의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도급받은 사업주를 말한다.
7. "관계수급인"이란 도급이 여러 단계에 걸쳐 체결된 경우에 단계별로 도급받은 사업주 전부를 말한다.
8. "안전관리"란 각종 사고의 원인이 되는 불안전한 상태나 조건 또는 행동을 사전에 발견하여 이를 시정하고 제거함으로써 사고를 예방하고, 사고발생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와 활동을 말하며,대주정공 임직원의 안전관리(이하 "산업안전"이라 한다), 대주정공에서 계약한 장비, 하역, 등의 안전관리, 대주정공 시설물의 안전관리 (이하 "시설안전"이라 한다)로 구분한다.

9. "보건관리"란 임직원의 건강유지·증진 및 사업장 환경 개선을 위한 조치와 활동을 말한다.
10. "사고"란 업무와 관련하여 임직원, 수급인 및 관계수급인 근로자(이하 "임직원 등"이라 한 다) 의 부상 또는 건강상 장해 등의 인명피해나 대주정공 또는 임직원 등의 재산상의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를 말한다.
11. "산업재해"란 근로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전기·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12. "중대재해"란 다음의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산업안전보건법」 제 2 조제 2 호에 따른 중대재해
1) 사망자가 1 인 이상 발생한 재해
2) 3 월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자가 동시에 2 인 이상 발생한 재해
3) 부상자 또는 직업성질병자가 동시에 10 인 이상 발생한 재해
나.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중대산업재해
1) 사망자가 1 명 이상 발생
2) 동일한 사고로 6 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 명 이상 발생
3)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 년 이내에 3 명 이상 발생
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중대시민재해
1) 사망자가 1 명 이상 발생
2) 동일한 사고로 2 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 명 이상 발생
3) 동일한 원인으로 3 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 명 이상 발생
13. "안전보건담당자"란 대주정공 안전보건관리 및 작업장 시설, 장비 관리에 관한 업무를 하는 실무자를 말한다.
14. "현장 팀장 및 책임"이란 관리감독자 역할 수행과 동시에 현장부서를 통제하고 지휘하는 자를 말한다.
15. "안전보건관계자"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 및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말한다.
16. "법정 안전관계자"란 안전보건관계자 외에 관계법령에 따라 안전관리에 관한 직책에 선임된 자를 말한다.
② 이 규정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이 규정에서 특별히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산업안전보건법」 (이하 "법"이라 한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이 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 「시설물의 안 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설물

안전법"이라 한다)·「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 법 시행령」(이하 "시설물안전법 시행령"이라 한다)·「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이하 "시설물안전법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4 조(안전보건경영방침)

① 대주정공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예산·인력·제도 등 운영·관리에 있어 안전 및 보건과 관련된 사항을 최우선으로 하여야 한다.

② 대주정공에 적합한 안전보건경영방침을 담아 간결하게 문서화 하고 시행일을 표기하여 사무실, 현장 근 로자 휴게실에 공표 또는 게시하여야 한다.

③ 안전보건담당자는 매년 안전보건경영방침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대주정공의 경영환경 등의 여건을 고려하여 안전보건경영방침 및 안전보건경영목표의 내용을 변경하여야 하며, 안전보건경영방침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매년 수립되는 안전경영책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안전보건경영방침을 대주정공 내 모든 구성원과 이해관계자가 인식하고 실 천할 수 있도록 각 사업장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 5 조(준수 의무)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함으로써 임직원 등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시키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1. 관계 법령과 이 사규에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 준수
2.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임직원 등에게 제공
3. 근로조건을 개선하여 적절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② 임직원 등은 관계법령 및 이 규정에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법령요지의 게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 34 조에 준한다.

제 2 장 안전·보건 관리조직과 그 직무

제 6 조(안전 및 보건관리 조직)

① 대주정공의 안전 및 보건관리 조직체계는 별표 1 과 같으며,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별표1의 공장을 총괄하는 자로서 이 규정 제3조제12호의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중

대재해처벌법에서 정한 다음 각 호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1. 대주정공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 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목에 따른 조치
가.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나.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다.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라.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②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사업장을 총괄하여 관리하는 자로 안전보건관계자 및 법정안전관계자를 선임하고 관계기관에 이를 신고 또는 보고 등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안전보건관계자의 선임기준 및 직무는 별표 2, 별표 3 과 같다.
③ 대주정공 경영책임자는 제 1 항부터 제 2 항의 조직·직책에 따른 업무수행에 필요한 권한을 부여하고 시 설·장비· 예산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하며, 제 1 항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안전보건팀장이 따로 정한다.
④ 안전보건팀은 규정 제 7 조, 제 8 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가 해당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 하는지를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경영책임자는 그 기준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안전보건총괄책 임자를 반기 1 회 평가하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관리감독자를 반기 1 회 평가·관리하여야 한다.
⑤ 제 5 항의 안전관리 평가에 관한 세부사항은 안전보건팀장이 따로 정한다.

제 7 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장장
②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별표 2 에 따른 직무를 총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 8 조(관리감독자)
① 사업장별 관리감독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작업을 지휘 감독하는 그 직무를 담당하는 자
2. 현장의 팀장 및 책임
3. 경영지원팀장
4. 안전보건담당자

② 관리감독자는 별표 2 에 따른 직무를 수행한다.
③ 관리감독자는 안전보건규칙 별표 3 에 해당하는 작업 시 작업시작 전 점검사항을 확인하고 이상이 발견되 면 즉시 수리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작업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관리감독자에게 제 2 항 별표 2 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권한을 부여하고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 9 조(안전관리자)
① 안전관리자는 사업장의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이하 "안전관리자"라 한다)를 선임하고 별표 2 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는 경우 그 자격은 시행령 별표 4 에 따른다.
③ 법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거나 교체하는 경우 또는 법 제 17 조제 5 항에 따라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선임하거나 위탁 하는 날부터 14 일 이내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 10 조(보건관리자)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사업장의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이하 "보건관리자"라한다)를 선임하고 별표 2 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보건관리자를 선임하는 경우 그 자격은 시행령 별표 6 에 따른다.
③ 법에 따라 보건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보건관리자를 선임하거나 교체하는 경우 또는 법 제 18 조제 5 항에 따라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보건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선임하거나 위탁 하는 날부터 14 일 이내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 11 조(안전보건관리담당자)
① 안전보건관리담당자는 사업장에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하 "안전보건담당자"라 한다)을 두어야 한다. 다만,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가 있거나 이를 두어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며 상시근로자 20 명 이상 50 명 미만인 사업장일 경

우 안전보건관리담 당자를 1 명 이상 선임해야 한다.
1. 제조업
2. 운수업
3. 하역업

③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선임하는 경우 그 자격은 시행령 제 17 조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갖추 었거나, 시행령 제 21 조에 따른 보건관리자의 자격을 갖추었거나,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안전보 건교육을 이수하였어야 한다.

④ 안전보건관리담당자는 별표 2 에 따른 직무를 수행한다.

⑤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선임한 경우 그 선임 사실 및 제 4 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했 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 12 조(산업보건의)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나 그 밖에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지도하기 위하여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렇지 않다.
1. 의사를 보건관리자로 선임한 경우
2. 법 제 18 조제 5 항에 따라 보건관리전문기관에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위탁한 경우
3.「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 28 조에 해당하는 경우

② 제 1 항에 따라 산업보건의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와 사업장은 시행령 제 20 조 및 시행령 별표 5 에 따 라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 수가 50 명 이상인 사업장으로 한다.

③ 산업보건의의 자격은「의료법」에 따른 의사로서 작업환경의학과 전문의, 예방의학 전문의 또는 산업보 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④ 산업보건의는 별표 2 에 따른 직무를 수행한다.

⑤ 산업보건의는 외부에서 위촉할 수 있다.

⑥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제 2 항 또는 제 3 항에 따라 산업보건의를 선임하거나 위촉했을 때에는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하거나 위촉한 날부터 14 일 이내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 13 조(작업지휘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안전보건규칙 제 39 조제 1 항에 해당하는 작업을 실시하는 경우 작업을 지휘·감독하는 자를 작업지휘자로 지정하고, 작업지휘자는 그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을 지휘·감독하여야 한다.

제 14 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법 제 24 조에 따라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1. 위원장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한다.
2. 사접주가 지명한 5 인 이내의 관리감독자
3.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을 같은 수로 구성한다.
4. 각 부서별로 직원들이 추천한 근로자 5 인 이내의 근로자 대표
5. 간사는 경영지원팀에서 담당한다.

② 법 제 24 조 제 3 항에 따라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의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분기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위원장이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를 통해 청취한 의견에 대해서는 개선태책을 마련하고, 누락되는 의견이 없도록 회의록에 기록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결과를 사업장내 게시판 부착, 조회시 집합교육에 의한 교육, 기타 방법으로 전 그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 결과를 3 년간 기록유지 보존하여야 한다.

⑥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의결사항

1.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 25 조 및 제 26 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제 29 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4.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제 129 조부터 제 132 조까지에 따른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6. 산업재해의 원인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중 중대재해에 관한 사항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8.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설비를 도입한 경우 안전 및 보건 관련 조치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해당 사업장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 15 조(안전보건협의체)

① 안전보건관리자 및 안전보건담당자는 제 14 조에 따라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경우 사업장 안전에 관한 중요사항을 협의하기 위해 원도급사 및 하도급사 노사 등이 참여하는 안전 협의체를 별도로 운영하여야 한다.

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해야 한다.
1. 작업의 시작 시간
2. 작업 또는 작업장 간의 연락방법
3. 재해발생 위험이 있는 경우 대피방법
4. 작업장에서의 법 제 36 조에 따른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5. 사업주와 수급인 또는 수급인 상호 간의 연락방법 및 작업공정의 조정
6. 협의체는 매월 1 회 이상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해야 한다.
7. 협의체 회의를 통해 청취한 의견에 대해서는 개선대책을 마련하고, 누락되는 의견이 없도록 회의록에 기록한다.
8. 도급인인 사업주는 법 제 29 조 제 1 항 제 2 호의 규정에 의하여 작업장을 2 일에 1 회 이상 순회점검 하여야 한다.
9. 법 제 64 조제 2 항에 따라 도급인이 작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점검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점검반을 구성해야 한다.
① 도급인
② 관계수급인
③ 도급인 및 관계수급인의 근로자 각 1 명(관계수급인의 근로자의 경우에는 해당 공정만 해당)

제 16 조(업무협조 등) 안전관리자 및 안전보건담당자는 관리감독자 및 그 밖의 관계인에게 재해 및 질병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권고하거나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감독자 및 그 밖의 관계인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 3 장 안전·보건교육

제 17 조(안전보건교육 계획 수립·시행)
① 안전보건관리자 및 안전보건담당자는 전년도 12 월 말일까지 사업연도의 임직원 안전보건교육의 대상, 내용, 방법 등을 포함한 안전보건교육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안전보건교육 계획은 제 27 조 제 2 항 제 1 호 다목과 연계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③ 제 1 항의 안전보건교육 계획 수립 시 타 법령에 적용되는 소방·가스·전기·승강기 등의 관련 안전보건 교육을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④ 안전보건담당자는 제 18 조부터 제 22 조의 교육을 고용노동부에서 지정하는 안전보건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근로자의 안전보건 수준 향상을 위하여 자체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⑤ 안전보건담당자는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한 후 설문조사, 시험 등으로 교육성과를 측정하여 다음 연도의 안전보건교육계획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 18 조(정기안전보건교육)
① 근로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사무직 종사 근로자 : 매반기 6 시간 이상
2. 사무직 외의 근로자 : 매반기 12 시간 이상
3.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 : 연간 16 시간 이상
② 제 1 항의 안전보건교육의 내용은 별표 4 와 같다.

제 19 조(신규채용 시 교육)
① 안전보건관리자 및 안전보건담당자는 근로자를 신규로 채용한 때에는 작업 투입 전 해당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다음 각 호 와 같이 실시해야 한다.
1. 일용근로자 및 1 주일 이하 근로계약을 체결한 기간제 근로자 : 1 시간 이상
2. 일주일 초과 1 개월 이하 근로계약을 체결한 기간제 근로자 : 4 시간 이상
3.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 8 시간 이상
② 제 1 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내용은 별표 4 와 같다. 제 23 조(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③ 관리감독자는 작업내용을 변경하여 근로자를 배치하는 경우 작업 배치 전 해당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 교육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시해야 한다.
1. 일용근로자 : 1 시간 이상
2.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 2 시간 이상
④ 제 1 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내용은 별표 4 와 같다.

제 20 조(특별안전보건교육) ① 안전관리자 및 안전보건담당자는 근로자를 시행규칙 별표 4 제 1 호 라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종사시키고자 하는 경우 해당 업무와 관계되는 안전보건에 관한 특별안전보건교육(이하"특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용직 근로자 : 2 시간 이상
2. 일용직 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 16 시간 이상
② 제 1 항 제 2 호에 따른 특별교육은 최초 작업에 종사하기 전 4 시간 이상을 실시하고, 12 시간은 3 개월 이 내에서 분할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제 1 항제 2 호에 따른 특별교육 대상 작업이 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인 경우 2

시간 이상으로 단축 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 특별교육 실시 방법은 관리감독자(안전관리자, 안전보건담당자)가 교육자료를 토대로 실시한다.
⑤ 특별교육을 실시한 경우에는 제 21 조, 제 22 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제 21 조(물질안전보건교육)
① 안전보건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 110 조에서 정하는 대상 화학물질의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근로자에게 교육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을 받은 근로자에 대해서는 해당 시간만큼 제 18 조부터 제 20 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실시 한 것으로 본다.
1. 대상 화학물질을 제조·사용·운반 또는 저장하는 작업에 근로자를 배치하는 경우
2. 새로운 대상 화학물질이 도입된 경우
3. 화학물질의 유해·위험성 정보가 변경된 경우
② 제 1 항의 교육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상 화학물질의 명칭(또는 제품명)
2. 물리적 위험성 및 건강 유해성
3. 취급상의 주의사항
4. 적절한 보호구
5. 응급조치 요령 및 사고 시 대처방법
6. 물질안전보건자료 및 경고표지를 이해하는 방법

제 22 조(직무교육)
① 안전관리자 및 안전보건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안전보건에 관한 직무 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하고, 안전보건교육 계획 수립 시 이를 반영해야 한다.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2. 안전관리자
3. 보건관리자
② 제 1 항에 다른 직무교육의 시간과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가. 신규교육 : 6 시간 이상, 선임 후 3 개월 이내
나. 보수교육 : 6 시간 이상, 신규 또는 보수교육 이수 후 매 2 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후 6 개월 사이
2.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가. 신규교육 : 34 시간 이상, 선임 후 3 개월 이내
나. 보수교육 : 24 시간 이상, 신규 또는 보수교육 이수 후 매 2 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후 6 개 월 사이

제 23 조(안전보건교육강사)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2. 관리감독자
3. 안전관리자(안전관리전문기관에서 안전관리자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4. 보건관리자(보건관리전문기관에서 보건관리자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5. 안전보건관리담당자(안전관리전문기관 및 보건관리전문기관에서 안전보건담당자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6. 산업보건의
7. 기타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

제 24(기록·보존) 안전관리자 및 안전보건담당자는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별지 제 1 호 서식의 안전보건교육일지에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제 17 조제 4 항에 따라 위탁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교육 기관으로부터 교육확인서 등을 받아 보존하여야 한다.
1. 교육일시 및 장소
2. 교육담당자
3. 교육과정 및 내용
4. 교육대상자 및 참석인원
5. 그 밖의 교육결과를 증명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제 4 장 작업장 안전관리

제 25 조(안전보건경영계획서 수립 및 실행)
① 안전보건담당자는 대주정공 전 사업장의 안전관리 대상 사업·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하

여 다음 연도 안전보건경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매 사업년도 전년 12 월 안전보건회의에서 공포하여야 한다.

② 제 1 항에 따라 수립한 안전경영책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전년도 안전경영 활동 실적 및 평가
2. 안전경영 방침 및 안전경영 활동 계획
3. 안전 조직 구성·인원 및 역할
4. 안전에 관한 시설 및 예산
5. 산업재해 및 안전사고 감축목표
6. 그 밖에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

③ 안전보건담당자는 안전보건경영계획서를 사업년도 1 월 ~ 2 월에 경영책임자에게 보고한다.

④ 안전보건담당자는 안전보건경영계획서 및 중대재해처벌법 이행·준수사항을 각 공장별 년 2 회 (상/하반 기 1 회) 평가·점검하여야 한다. 평가관련 세부 계획은 별표 9 에 따른다.

제 26 조(안전보건경영계획서 공시)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매년 1 월 말일까지 당해 연도 안전보건경영 계획서(제 25 조 2 항의 내용을 포함한다)를 전 직원에게 공포 및 게시하여야 한다.

제 27 조(안전관리 기본계획)

① 안전보건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매 사업년도의 안전관리 기본계획을 전년도 12 월 31 일까지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산업안전에 관한 사항

가. 대주정공 안전경영 방침 및 목표

나. 안전사고 예방활동

다. 재해율 관리

2. 시설안전에 관한 사항

가.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나. 시설물 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긴급안전점검(이하 "안전점검 등"이라 한다) 및 성능평가에 관한 사항

②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제 1 항의 안전관리 기본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체 세부추진 계 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산업안전 세부추진계획

가. 안전보건 관리체계 및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나. 안전보건관계자 및 법정안전관계자 선임
다. 안전보건교육 및 법정안전관계자 안전교육 실시계획
라. 유해화학물질 및 유해·위험한 기계·기구·설비 등 안전관리
마. 사업장 재해저감 활동계획
바. 사업장 위험성평가
사. 작업환경측정 및 건강진단 실시계획
아. 안전보호구 유지관리계획
자. 그 밖의 안전사고 예방활동
2. 시설안전 세부추진계획
가.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 조직·인원·장비
나. 긴급상황 발생 시 조치체계
다. 안전점검 등, 성능평가 및 보수·보강 실시계획
라.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 비용

제 28 조(비상조치계획)
① 안전관리자 및 안전보건담당자는 제 8 장의 위험성평가 등에서 도출된 중대재해, 화재 폭발 등 사고발생 가능성에 대한 대비 및 대응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비상상태별 시나리오와 대책을포함한 비상조치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비상조치계획에는 시행규칙 제 50 조제 1 항제 4 호의 각목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비상조치계획은 각 사업장의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 리 알려야 한다.

제 29 조(안전보건표지 설치 및 게시, 위험물질 관리)
① 안전관리자 및 안전보건담당자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장소·시설·물질에 대한 경고·지시·안내·금지 또는 그 밖에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 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사항 등을 그림, 기호 및 글자 등으로 나타낸 표지(이하 "안전보건표지"라 한다)를 근로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설치하거나 게시하여야 한다.
② 안전보건표지의 종류, 형태, 색채, 용도 및 설치·부착 장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 제 38 조부 터 제 40 조에 따른다. 안전보건표지의 종류와 형태는 별표 8 과 같다.
③ 안전관리자 및 안전보건담당자는 제 1 항에 따라 안전보건표지를 설치할 때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경우 해당 근로자의 모국어로 작성된 안전보건표지를 부착하여 야 한다.

④ 위험물질은 작업장과 별도의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며 작업장내에는 당일 작업에 필요한 양만큼 두어야 하고, 화기 기타 점화원이 될 우려가 있는 것에 접근 시키거나 주입 또는 가열하거나 증발하는 행 위를 해서는 안된다.
⑤ 위험물 보관장소에는 화기 등의 휴대를 금하고 관계자외에는 출입을 금한다.
⑥ 위험물의 정의 및 관리대상은 관계법령에 따른다.

제 30 조(고위험작업 안전조치)
① 사업주는 위험성평가, 현장조사 등을 통해 고위험작업을 선정·분류하고, 관리감독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규칙에 따라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
2.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
3. 전기, 열,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
4. 작업 시 불량한 작업방법 등에 의한 위험
5. 다음 각 호의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위험
가.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나. 토사·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
다.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라. 천재지변으로 인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
② 관리감독자는 안전관리 대상 사업·시설에 대해 주기적으로 안전에 관한 자체 점검을 실시하고 미흡사 항 발생 시 조치하여야 한다.
③ 관리감독자는 안전관리 대상 사업·시설에서 작업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작업장에 출입하기 전 개인보호 구 착용 준수, 음주자 작업장 출입 금지 등의 필수 안전조치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안전조치를 준수하지 않은 근로자에 대해서는 퇴거 조치를 하는 등 작업장 안전조치를 철저히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 다.
④ 관리감독자는 근로자가 별표 5 에 따른 위험작업을 할 경우에는 가급적 2 인 1 조로 근무할 수 있도록 배 치하여야 한다.
⑤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위험, 작업부서의 안전수칙을 제정하여 당이 작업자 및 관련자가 볼 수 있도록 게시하여야 하고 이를 숙지 준수하여야 한다.
⑥ 사업장내 작업자 간의 안전유지를 위하여 작업자가 지켜야 할 안전수칙에는 일반수칙과 특별수칙으로 구분된다.
가. 일반수칙은 전 작업장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안전수칙으로 제정하여 사용한다.
나. 특별수칙은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을 실시하는 곳으로 관리감독자가 제정하여 사용

한다.

제 31 조(안전작업허가서 발급 및 이행)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사업장(지배 관리장소도 포함)에서 다음 각호의 작업을 수행할 경우에는 안전보건팀에서 작업허가서를 발급, 승인한 후 작업을 실시 하도록 하여야 한다. 작업허가서를 제출하기 어려울 경우 구두로 보고·승인을 받고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감독자는 안전 장구류 착용 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1. 화기작업
2. 전기(정전)작업
3. 밀폐공간작업
4. 고소작업
5. 중장비 및 중량물 취급작업
6. 그 밖에 현장팀장(관리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작업

② 제 1 항에 따른 안전작업허가 제도 운영에 대한 세부사항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따로 정한다.

제 32 조(안전장구 및 보호구)

① 현장팀장(관리감독자)은 근로자의 안전확보를 위해 작업환경과 조건에 적합한 보호구 및 색상을 구분한 안전복장을 지급하고 착용토록 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는 작업환경과 조건에 적합한 보호구를 착용할 권리와 의무가 있으며, 현장팀장(관리감독자)으로 부터 보호구를 지급받거나 착용지시를 받은 근로자는 그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③ 현장팀장(관리감독자)은 제 1 항에 따라 보호구를 지급하는 경우 별지 제 5 호서식의 보호구 지급대장에 기 록하여야 하며, 지급한 보호구의 교체주기 및 관리상태를 점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 화 등 직원 개인에게 지급된 보호구는 교체주기까지 개인이 직접 관리하여야 한다.

④ 안전관리자 및 안전보건담당자는 보호구를 구입할 때에는 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검정에 합격한 제품으로 구입을 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에 의한 검정 대상이 아니거나 검정이 면제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⑤ 안전관리자 및 안전보건담당자는 보호구를 공동 사용하여 근로자에게 질병이 감염될 우려가 있는 경우 개인전용 보호구를 지급하고 질병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 안전보호구 및 안전복장의 지급관리기준은 별표 7 과 같다.

제 33 조(기계·기구 및 설비의 방호조치)

① 관리감독자는 법 제 80 조에 따라 동력으로 작동하는 기계·기구에 대한 방호조치를 하여야 하며, 방호조치가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방호조치와 관련된 장치를 상시적으로 점검하고 정비하여야 한다.

② 관리감독자는 제 1 항에 따른 방호조치를 해체하려는 경우 시행규칙 제 99 조에 따라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관리감독자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설비로서 시행령 제 78 조제 1 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이하 "유해·위험기계 등"이라 한다)을 사용하는 경우 유해·위험기계 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에 대하여 고용노 동부장관이 실시하는 검사를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④ 관리감독자는 제 3 항에 따라 안전검사를 받은 경우 합격 표시 필 증을 알아보기 쉽게 부착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⑤ 관리감독자는 법 제 84 조에 따른 안전 인증 대상 기계 등 또는 법 제 89 조에 따른 자율안전 확인대상 기 계 등을 구매할 경우 인증 또는 신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 34 조(전기설비 안전)

① 안전관리자 및 안전보건담당자는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기안전관리법」제 22 조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거나 전기안전 관리업무를 대행·위탁하여야 한다.

② 안전관리자 및 안전보건담당자는 전기설비의 고장 또는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방지에 필요 한 사전 조치를 취하고 고장 또는 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확대 방지 및 복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전기설비(수배전반, 그 밖의 고압전기 등)가 설치된 장소에는 모든 사람의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하여 전 기안전관리자(대행)의 책임하에 위험표시를 하여야 한다.

④ 기타 전기설비 관련 안전을 위한 사항은 안전보건규칙 제 2 편제 3 장을 따른다.

제 35 조(소방시설 안전)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며 소방안전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해당 소방대상물에 대한 소방계획서 작성
2. 자위소방대 조직
3.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4. 소방훈련 및 교육
5. 소방시설이나 그 밖의 소방 관련 시설의 유지·관리
6. 화기취급의 감독
7. 기타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업무

② 소방안전관리자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방시설물의 안전과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안전관리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는 작동기능점검, 종합정밀점검을 포함)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 36 조(교통재해 예방)

① 안전관리자 및 안전보건담당자는 사업장 내를 주행하는 모든 차량이 소정의 주행로와 제한속도를 엄수하도록 속도제한 표지판 설치, 과속방지턱 주의 표지판 설치 등 사업장 내 교통재해 예방을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관리감독자는 구내를 주행하는 차량에 의한 재해를 방지하기 위해 사업장 내를 출입하는 모든 사람이 표시되어있는 소정의 통로 및 횡단장소를 이용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③ 임직원 등은 업무를 위해 도로를 자동차로 주행하는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등 관계 법규를 준수하여 안 전운행을 하여야 한다.

제 37 조(사업주의 작업중지)

① 관리감독자는 작업 지휘한 작업에 대하여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또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사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로부터 대피시키는 등 필요한 안전보건상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관리감독자는 폭염·한파, 미세먼지 등 이상기후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안전관리 대 상 사업·시설에서 작업하는 현장 근로자가 충분한 휴식을 취하며 작업하거나, 필요시 작업을 중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 38 조(근로자의 작업중지) ① 근로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다.

② 제 1 항에 따라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는 지체 없이 관리감독자 등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관리감독자는 제 2 항에 따른 보고를 받으면 긴급상황에 따라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 고,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한다.

④ 관리감독자는 제 3 항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완료한 경우 별지

제 4 호서식의 작업 중지 요청 기록대장에 보고내용, 조치결과를 기록하여야 한다.
⑤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근로자가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에는 제 1 항에 따라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된다.

제 39 조(시설물 안전점검 등 및 성능평가)
① 안전관리자 및 안전보건담당자는 시설물의 기능유지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시설물안전법 제 11 조, 제 12 조, 제 13 조 및 제 40 조에 따라 소관시설물에 대하여 안전점검 등 및 성능 평가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관리하여야 한다.
② 안전관리자 및 안전보건담당자는 시설물안전법 제 55 조 및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제 35 조에 따라 안전점 검 등 및 성능평가, 모든 보수·보강 실적 등 시설물 이력 변경사항은 즉시 관련내용을 보관해야 한다.
③ 안전보건관책임자는 시설물 안전관리 기본계획에 따라 안전관리 업무가 적정하게 수행되는지 관리하여야 하며, 안전 점검 등 및 성능평가 실적과 보수·보강 이력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④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제 1 항에 따른 안전점검 등 및 성능평가 결과 시설물 안전법 시행령 제 18 조에서 정하는 중대한 결함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경영책임자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⑤ 관리감독자는 소관 시설물에 대한 안전 점검 등 및 성능평가 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야 하며, 안전관리자 및 안전보건담당자는 안전 점검 등 및 성능평가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법 제 93 조 규정에 해당하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설비로서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것(이하 "유해·위험기계 등"이라 한다)을 사용하는 경우 유해·위험 기계 등의 안전에 관한 성 능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⑦ 검사신청은 검사주기 만료 30 일전에 위탁받은 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⑧ 검사결과 교부 받은 검사필증은 해당 기계·기구·설비의 보기 쉬운 곳에 부착한다.

제 5 장 작업장 보건관리

제 40 조(보건조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소속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규칙에 따라 필요한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원재료·가스·증기·분진·흄·미스트·산소결핍·병원체 등에 의한 건강장해

2. 방사선·유해광선·고온·저온·초음파·소음·진동·이상기압 등에 의한 건강장해
3.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기체·액체 또는 찌꺼기 등에 의한 건강장해
4. 계측감시, 컴퓨터 단말기 조작, 정밀공작 등의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
5. 단순반복작업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
6. 환기·채광·조명·보온·방습·청결 등의 적정기준을 유지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건강장해

제 41 조(유해인자 관리)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발암물질 등 유해인자로 인해 발생될 수 있는 산업재해나 직업병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법 제 107 조에 따라 유해인자 허용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 42 조(작업환경측정)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법정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가 있는 경우에는 작업환경 측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작업환경측정 대상 작업장 및 측정 방법 등은 법 제 125 조 및 관련 시행령, 시행규칙에 따른다. ③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작업환경측정 결과를 해당 사업장 근로자(관계수급인 및 관계수급인 근로자를 포함)에게 알려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시설·설비의 설치·개선 또는 건강진단의 실시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 43 조(휴게시설의 설치)
① 현장에는 근로자(관계수급인의 근로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②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등 시행령 제 96 조의 2 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에 제 1 항에 따라 휴게시설을 갖추는 경우 시행규칙 제 194 조의 2 에서 정하는 설치·관리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안전관리자 및 안전보건담당자는 반기 1 회 휴게시설 관련 불편사항 및 개선요구사항을 확인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④ 각 작업장의 휴게시설에 대한 관리 및 활용은 필요 노·사간 협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제 44 조(근로자 건강진단)
① 대주정공에서 실시하는 건강진단의 종류는 그 실시 시기 및 대상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일반건강진단
2. 특수건강진단

3. 배치 전 건강진단
4. 수시건강진단
5. 임시건강진단
6. 자율건강진단

② 제 1 항에 따른 건강진단의 실시 시기, 대상 및 방법 등은 법 제 129 조부터 제 135 조 및 관련 시행 령, 시행규칙에 따른다.

③ 안전관리자 및 안전보건담당자는 건강진단계획을 수립하고 해당 부서별 검진일정, 검진대상자, 검진기관 및 건강진단절차 등 건강진단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 임직원은 대주정공에서 제 1 항에 따라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정당한 이유 없이 기피하거나 고의로 거부하 여서는 안된다.

⑤ 대주정공은 근로자 건강진단의 결과를 근로자의 건강 보호 및 유지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 다.

제 45 조(건강상담)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직원의 건강관리와 질병의 조기발견을 위하여 전문의를 초청, 건강 상담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제 1 항에 따른 건강상담 결과 이상이 있는 직원에 대하여는 전문의료기관에 의뢰하여 치료하도록 유도한다.

제 46 조(유해물질 취급 및 관리)

① 관리감독자는 안전보건규칙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건강장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작업을 지휘하고 환기설비의 이상 유무 점검 및 보호구 착용 상황을 감시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해야 한다. ② 제 1 항의 관리감독자는 안전보건규칙 제 420 조에 따른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장소에 관계 근로자 외의 출입을 금지시키고 그 뜻을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 47 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비치)

① 안전관리자 및 안전보건담당자는 법 제 110 조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이하 "대상화학물질"이라 한다)을 취급하는 직원이 쉽게 보거나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각 대상 화학물질의 물질안전보건자료를 항상 게시 또는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안전관리자 및 안전보건담당자는 대상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작업공정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관리 요령을 게시하여야 하고, 이 관리 요령은 유해·위험성이 유사한 대상 화학물질의 그룹별로 작성하여 게시할 수 있다.

1. 대상 화학물질의 명칭

2. 건강 및 환경에 대한 유해성, 물리적 위험성
3. 안전 및 보건상의 취급 주의사항
4. 적절한 보호구
5. 응급조치 요령 및 사고 시 대처방법

③ 안전관리자 및 안전보건담당자는 작업장에서 사용하는 대상 화학물질을 담은 용기에 시행규칙 제 170 조 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경고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용기에 이미 경고표시가 되어 있는 등 고용노동부령 으로 정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48 조(근골격계질환예방)

① 안전관리자 및 안전보건담당자는 안전보건규칙 제 656 조제 1 호의 근골격계 부담 작업으로 인하여 안전보건규칙 제 656 조제 2 호의 근골격계 질환이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 예방을 위한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임직원은 안전관리자 및 안전보건담당자가 제공하는 근골격계 질환 예방 조치에 적극적으로 따라야 하며, 작업시작 전, 작업 중 적절한 스트레칭을 실시하여 스스로 질환의 예방에 힘써야 한다.

제 49 조(근로자 건강유지 및 증진)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임직원이 장시간 근로, 야간작업을 포함한 교대 작업, 차량운전[전업(專業)으로 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및 정밀기계 조작 작업 등 신체적 피로와 감정노동에 따른 정신적 스트레스 등(이하 "직무스트레스"라 한다)이 높은 작업을 하는 경우에 직무스트레스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을 위하여 안전보건규칙 제 669 조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재난 또는 중대사고 발생 사업장의 사고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의 업무 트라우마 등 건강장해 발생 시 심리치료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안전보건 관리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 50 조(자격 또는 면허에 의한 취업제한)

① 관리감독자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으로서 「유해· 위험작업의 취업제한에 관한 규칙」 별표 1 에서 정하는 작업의 경우 그 작업에 필요한 자격·면허·경험 또는 기능을 가진 근로자가 아닌 자에게 그 작업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 1 항에 따른 작업에 대한 취업제한은 「유해·위험작업의 취업제한에 관한 규칙」 별표 1 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작업을 직접 하는 사람에게만 적용하며, 해당 작업의 보조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 51 조(근로시간 연장제한)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법 제 139 조에 따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종 사하는 근로자에게는 1 일 6 시간, 1 주 34 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제 1 항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외에 작업과 휴식의 적정한 배분 및 근로시간과 관련된 근로조건의 개선을 통하여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 52 조(질병자의 근로금지 및 취업제한)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전염의 우려가 있는 질병에 걸린자, 근로로 인하여 병세 악화가 우려되는 자에 대하여는 의사의 진단에 따라 근로를 금지하거나 제한하여야 한다. ② 관리감독자는 제 1 항에 따라 근로를 금지 또는 제한받은 직원이 건강을 회복한 때에는 의사의 의견을 들어 지체 없이 업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제 6 장 도급사업 안전 및 보건관리

제 53 조(도급의 제한)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법 제 58 조에 따라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을 도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 중 법 제 59 조에 따른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작업에 대해 도급을 할 수 있다.

제 54 조(안전보건총괄책임자)

① 대주정공은 사업을 도급하여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대주정공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의 공장장을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제 1 항에 따른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선임기준은 별표 2 와 같다.

③ 제 1 항에 따른 안전보건총괄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하며, 직무수행에 필요한 권한을 가진다.

1. 제 7 장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2. 제 37 조에 따른 작업의 중지
3. 제 56 조에 따른 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조치

4. 법 제 72 조에 따른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집행 감독 및 그 사용에 관한 관계 수급인 간 의 협의·조정
5. 안전인증대상기계등과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 등의 사용 여부 확인

제 55 조(도급인의 안전 및 보건조치) 안전보건총괄책임자는 관계수급인의 근로자가 대주정공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안전 및 보건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구 착용의 지시 등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작업행동에 관한 직접적인 조치는 제외한다.

제 56 조(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안전보건총괄책임자는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대주정공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도급인과 수급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2. 작업장 순회점검
3. 관계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법 제 29 조제 1 항부터 제 3 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위한 장소 및 자료의 제공 등 지원
4. 관계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법 제 29 조제 3 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의 실시 확인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대비한 경보체계 운영과 대피방법 등 훈련
가. 작업 장소에서 발파작업을 하는 경우
나. 작업 장소에서 화재·폭발, 토사·구축물 등의 붕괴 또는 지진 등이 발생한 경우
6. 위생시설 등 시행규칙 제 81 조에서 정하는 시설의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의 제공 또는 대주정공이 설치한 위생시설 이용의 협조
7. 도급사업의 합동 안전·보건점검 실시
8. 같은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및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작업에 있어서 작업시기·내용, 안전 조치 및 보건조치 등의 확인
9. 제 8 호에 따른 확인 결과 대주정공 및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작업 혼재로 인하여 화재·폭발 등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작업시기·내용 등의 조정

제 57 조(도급인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 제공 등)
① 다음 각 호의 작업을 도급하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는 그 작업을 수행하는 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시행규칙 제 83 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작업 시작 전에 수급인에게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문서로 제공하여야 한다. ② 안전보

건총괄책임자가 제 1 항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해당 작업 시작 전까지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급인이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안전보건총괄책임자는 수급인이 제 1 항에 따라 제공받은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에 따라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수급인은 제 2 항에 따른 요청에도 불구하고 안전보건총괄책임자가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도급 작업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급인은 계약의 이행 지체에 따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 58 조(도급인의 관계수급인에 대한 시정조치) 안전보건총괄책임자는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대주정공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수급인 또는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받은 작업과 관련해서 법 또는 시행령, 시행규칙을 위반하면 수급인에게 그 위반행위를 시정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급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조치에 따라야 한다.

제 59 조(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계획서 검토 및 안전보건수준평가)
① 안전관리자 및 안전보건담당자는 도급 시 재해예방 능력 및 기술이 있는 수급인의 선정과 적정 안전보건비용 부담여부를 평가·확인할 수 있는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안전보건총괄책임자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으로 운영을 하는 경우 사고예방을 위해 계약 체결 전 수급인으로부터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등을 제출받아 검토하여 수급인의 안전보건 수준평가를 하고 부적합한 경우 개선요청하고 적합할 경우에만 계약할 수 있다. 개선되지 않을 경우에는 작업은 중지하 여야 한다. ③ 수급인의 안전보건 수준평가에 대한 세부사항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따로 정한다.

제 7 장 위험성평가

제 60 조(위험성평가 실시주체)
① 안전관리자 및 안전보건담당자는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근로자를 참여시켜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평가하여 관리를 개선하는 등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안전관리자 및 안전보건담당자는 작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도급한 경우(이하 이 장에서 "도급사업"이라 한다)에도 제 1 항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급인이 별도 실시한 위험성평가 결과를 검토하여 대주정공이 개선할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개선하여야 한다.
제 61 조(위험성평가 계획수립) 안전관리자 및 안전보건담당자는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위

험성평가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제 9 조에 따라 위험성 평가의 목적, 평가방법, 담당자, 역할, 책임자 역할, 평가 대상별 역할, 주지방법, 유의사항 등에 관한 실시규정을 수립·시행 하여야 한다.

제 62 조(위험성평가 교육) 안전관리자 및 안전보건담당자는 위험성평가 담당자 또는 관리감독자 등에게 위험성평가에 필요한 지식과 경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외부교육기관의 강좌를 수강하게 하거나 부서/팀 자체적으로 위험성평가 방법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 할 수 있다.

제 63 조(위험성평가 실시시기)
① 위험성평가는 최초평가, 수시평가, 정기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하며, 최초평가 및 정기평가는 전체 작업(비정형작업 포함)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② 수시평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계획이 있는 경우 해당 계획의 실행을 착수하기 전에 실시한 다. 다만, 제 5 호의 경우 재해발생 작업을 대상으로 작업을 재개하기 전에 평가한다.
1. 사업장 건설물의 설치·이전·변경 또는 해체
2. 기계·기구, 설비, 원재료 등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3. 건설물, 기계·기구, 설비 등의 정비 또는 보수(주기적·반복적 작업으로서 정기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제외)
4. 작업방법 또는 작업절차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5. 중대산업사고 또는 산업재해(휴업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발생
6. 그 밖에 관리감독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③ 정기평가는 최초평가 후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년 1 회 이상 실시한다.
1. 기계·기구, 설비 등의 기간 경과에 의한 성능 저하(열화, 나사풀림)
2. 근로자의 교체 등에 수반하는 안전·보건과 관련되는 지식 또는 경험의 변화
3. 현재 수립되어 있는 위험성 감소대책의 유효성 등

제 64 조(위험성평가 실시방법) ① 안전관리자 및 안전보건담당자는 관리하는 사업장의 공정과 작업내용에 적합한 위험성평가 방법을 선정하여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각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위험성을 추정·결정 한 후 위험성 감소대책을 수립·실행하는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위험성평가 시 산업안전보건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의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③ 제 1 항에 따른 평가 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작업에 종사하

는 근로자를 참여시 켜야 한다.
1. 관리감독자가 해당 작업의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는 경우
2. 사업주가 위험성 감소대책을 수립하는 경우
3. 위험성평가 결과 위험성 감소대책 이행여부를 확인하는 경우
④ 위험성평가 담당자는 허용 불가능한 유해・위험요인은 제거·대체·변경, 공학적 대책, 관리적 대 책, 개인보호구 사용 순서로 개선대책을 수립하고 업무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⑤ 안전관리자 및 안전보건담당자는 위험성평가 실행결과, 남아있는 유해·위험요인에 대해서는 게시, 주지 (사후 교육) 등의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알려야 하며, 개선대책 이행 완료 후에는 평가표에 개선완료일, 업 무담당자 서명·날인하여 기록관리 하여야 한다.
⑥ 안전관리자 및 안전보건담당자는 도급사업 계획단계에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 결과에 따른 위험성 감 소대책을 설계(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직접내역 등), 시방서 등에 반영하고 수급인에게 평가결과 를 제공하여야 한다.
⑦ 안전보건총괄책임자와 안전관리자 및 안전보건담당자는 도급사업 착수 전 관계 수급인이 실시하는 위험 성평가 결과를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수급인에게 보완 조치하도록 요구하여야 하며, 이후 수급인이 실 시한 위험성평가 감소대책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부실한 경우 보완 조치를 요구하여야 한다.
⑧ 위험성평가 실시에 대한 구체적 방법은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고용노동부 고시)」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65 조(위험성평가 문서화)
① 안전관리자 및 안전보건담당자는 위험성평가의 결과와 조치사항을 기록·보존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위험성평가를 위해 사전 조사한 안전보건정보
2. 평가대상 공정의 명칭 또는 구체적인 작업내용
3. 유해·위험요인의 파악
4. 위험성 추정 및 결정
5. 위험성 감소대책 및 실행
6. 위험성 감소대책의 실행계획 및 일정
7. 위험성평가 사전·사후 교육 결과 등
8. 그 밖에 사업장에서 필요하다고 정한 사항
② 위험성평가에 관한 문서는 제 63 조에 따른 실시시기별 위험성평가를 완료한 날로부터 최소 3 년 이상 보 존하여야 한다.

제 8 장 사고조사 및 대책 수립

제 66 조(안전사고의 구분) 안전사고는 다음 각 호로 구분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주정공 직원의 안전사고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 37 조에 따른 업무상 사고 및 업무상 질병
나. 중대재해로 이어질 가능성 또는 대외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거나 우려되는 사고
2. 대주정공에서 사업을 도급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급인의 안전사고(이하 "도급 안전사고"라고 한다)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 37 조에 따른 업무상 사고 및 업무상 질병
나. 중대재해로 이어질 가능성 또는 대외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거나 우려되는 사고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주정공이 운영·관리중인 시설물과 관련하여 발생한 시설물의 안 전사고(이하 '시설 안전사고'라 한다)
가.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제 18 조에 따른 시설물 주요 부위의 중대한 결함으로 인해 붕괴되거나 전도되는 등 보수·보강 또는 재시공이 필요한 사고
나. 시설물 사고의 영향으로 사망자 또는 실종자가 발생되거나 10 명 이상의 부상자가 발생한 사고
다. 중대재해로 이어질 가능성 또는 대외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거나 우려되는 사고

제 67 조(응급조치 등) ① 사고발생 최초 목격자는 부상자 및 시설에 대한 응급조치를 한 후 지체 없이 해당 관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관리감독자는 제 1 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즉시 연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실시하고,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알리고 관리감독자는 부상자 및 시설에 대한 관리와 복구대책 등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 68 조(안전사고발생보고)
① 안전관리자 및 안전보건담당자는 제 66 조에 따른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별표 6 의 사고 보고계통에 따라 별지 제 2 호서식에 따른 사고 발생보고를 하여야 한다.
②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제 66 조제 1 호가목의 산업 안전사고 중 다음 각 호의 사고에 대하여 시행규칙 제 73 조에 따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 등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안전보건담당자에게 통보하여 야 한다.
1. 사망자 또는 3 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산업재해

2. 법 제 2 조 제 2 호에서 정한 중대재해

③ 안전보건담당자는 중대재해, 중대재해로 이어질 가능성 또는 대외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거나 우려되는 사 고가 발생한 경우 본사-공장 합동 사고대응반을 운영하여 대외기관 사고조사 대응, 부상자 및 시설 관 리 등 사고대응을 실시하고 별표 6 의 사고보고계통에 따라 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 69 조(안전사고 조사)

① 관리감독자는 제 66 조제 1 호의 가목 및 다목, 같은 조 제 2 호부터 3 호까지 해당하는 안전사고 발생 즉시 사고현장을 보존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조사를 하여야 한다.

1. 재해자 인적사항 및 피해정도
2. 사고현장 사진촬영 및 약도작성
3. 사고관련자 및 목격자 진술 청취
4. 그 밖의 사고의 원인규명에 필요한 사항

② 안전사고 관련자는 제 1 항에 의한 조사시 입회·검사·측정 및 증빙서류 제출 등 안전사고 조사에 성실 히 임해야 한다.

③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사고의 중요성, 조사의 필요 성 등을 검토하여 사고조사반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감독자는 제 1 항에 따른 조사결과를 안전관리자 및 안전보건담당자에게 제공하고 현장 및 증거보존 등 사실 규명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법 제 2 조에 따른 직원의 중대재해
2. 이 규정 제 66 조 제 3 호에 따른 시설안전사고
3. 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중대재해로 이어질 가능성 또는 대외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거나 우려되는 사고

제 70 조(안전사고 조사결과 보고)

① 관리감독자는 안전사고 내용을 조사한 후 지체 없이 제 69 조 1 항의 조사내용을 안전관리자 및 안전보건담당자에게 제공하고 안전관리자 및 안전보건담당자는 별지 제 2 호, 제 3 호 서식에 맞춰 안전사고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재해자 및 목격자 진술서(별지 제 3 의 2 호서식) 각 1 부
2. 현장도면(또는 약도)
3. 사고현장 사진
4. 그 밖의 조사결과의 증빙에 필요한 사항

② 안전보건담당자는 제 69 조제 3 항에 따라 사고조사를 한 경우 안전사고 원인 및 조사 결과, 재발방지 대책 등을 포함한 보고서를 작성하고, 관리감독자는 유사한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안전관리자 및 안전보건담당자 및 관리감독자는 안전사고 발생 30 일 이내에 별지 제 3 의 3 호서식
에 따라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재발방지대책의 적정성을 검토·확인하여야
한다.
④ 안전관리자 및 안전보건담당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사고보고서를 보고하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경영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안전보건담당자는 해당 내용을 검토하여 사고내용을 분석하고 관련 내용을 전 공장에 전파한다.

제 71 조(사고조사위원회)
① 경영지원팀장은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경영지원팀장이 따로 정한다.

제 72 조(아차사고 등록·공유)
① 아차사고는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안전사고를 말하며, 관리감독자는 아차사고 사례가 공유되도록 지원해야 한다. ② 안전관리자 및 안전보건담당자는 아차사고 사례조사를 통해 원인 파악 및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안전관리자 및 안전보건담당자는 해당 위험을 개선조치하고 유사 위험이 제거될 수 있도록 전사 공유하여야 하며, 유사 위험을 보유한 관리감독자는 적극 개선 조치하여야 한다.

제 73 조(재해발생현황분석 및 전파) 안전관리자 및 안전보건담당자는 매년 12 월 중에 당해 연도 발생재해 및 아차사고를 종합 분석한 후, 대주정공 전 직원에게 전파하여야 한다.

제 9 장 상·벌 제도

제 74 조(표창의 종류)
① 표창은 상장 및 상품 수여, 상장 및 상금 수여, 승급 및 승진, 포상휴가 등으로 구분하고 상장 및 상품 수여, 상장 및 상금 수여는 동시에 또는 개별적으로 분리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상금의 액수, 상품의 종류, 승급, 승진, 포상 휴가일수 등의 결정은 회사에서 정한다.

제 75 조(표창의 기준) 다음 각 호의 1 에 해당하는 자는 회사에서 심사하여 표창할 수 있다.
① 업무상 유익한 발명, 창안 등으로 공적이 현저한 자
② 재해를 미연에 방지하거나 또는 비상시에 있어서 특히 공로가 있는 자
③ 회사의 제 규정, 제 수칙을 성실하게 준수하여 타의 모범을 보인자 및 기능이 우수하여 타의 모범이 된 다고 인정된 자
④ 기타 업무에 성실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자

제 76 조(포상) 경영지원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부서에 대하여 인사담당부서에 포상을 의뢰할 수 있다.
1. 모범적으로 안전 및 보건활동을 한 개인 또는 부서
2. 재해 및 사고피해의 최소화를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한 개인 또는 부서

제 77 조(징계의 사유) 다음의 경우 징계를 하고 인사위원회를 징계위원회로 보고 절차를 진행한다.
① 회사의 규율과 상사의 정당한 지시를 어긴 자
② 회사가 정한 복무규정을 위반한 자
③ 음주 도박 등 풍기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
④ 폭행, 폭언, 위력을 행사한자
⑤ 손해를 발생하게 한자
⑥ 기타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된 자

제 78 조(징계의 종류)
①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이 7 종으로 구분한다.
1. 견책 : 경고 / 시말서를 제출케 하고 장래를 훈계한다.
2. 감급 : 직원의 급료를 감액 지급하는 것을 말하며 감급 총액은 임금 지급기에 있어서 월 급여액의 1/10 이내로 한다.
3. 출근정지(정직) : 시말서를 받고 그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말하며 단기는 30 일 이내, 장기는 3 개월 이내로 하고, 그 기간 내는 임금을 지불하지 아니한다.
4. 감격 : 직원의 자격(지위)을 1 등급 강하함을 말한다.

5. 해고 : 직원의 신분을 박탈하여 면직시키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에는 예고 기간을 두지 않고 즉시 해고시킨다. 다만, 해고예고 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할 지방노동청장의 승인을 받는다.
② 견책은 인사위원회 회부 없이 행할 수 있다.

제 79 조(징계의 심의)
①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징계의결을 위한 회의 전까지 징계위원회의 위원들에게는 회의일 시, 장소, 의제 등을 징계 대상 직원에게는 서면으로 출석통지를 각 통보한다. ② 징계위원회는 징계사유를 조사한 서류와 입증자료 및 당사자의 진술 등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여 공정하게 심의한다. ③ 징계위원회의 의원이 징계대상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그 징계사유와 관계가 있을 때에는 그 위원은 그 징계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④ 징계위원회는 의결 전에 해당직원에게 소명할 기회를 부여한다. 다만, 출석 통지에도 참석하지 아니한 경우는 소명의 기회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⑤ 간사는 징계의결을 위한 회의에 참석하여 회의록을 작성하고 이를 보관한다.

제 80 조(징계결과 통보 및 재심청구)
① 징계결과는 해당 사원에게 적용조항, 처분내용 등을 명시하여 통보한다. ② 징계처분을 받은 자는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0 일 이내에 서면으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재심을 청구하더라도 재심결과 통보 전까지 초심의 효력은 발생한다.

제 81 조(재정 및 신원보증인, 손해배상, 기타 책임의 관계)
① 직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불법행위)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제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고, 이를 재정(및 신원)보증인과 연대하여 행하여야 한다. ② 징계에 해당하는 행위에 의해서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 해당 직원 본인과 재정 및 신원 보증인의 책임부담에 기한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의무는 징계에 의해서 면제되지 않는다. ③ 전 2 항의 손해배상으로 국가법률 상 별도로 부담하는 손해배상 및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

제 82 조(징계해제) 징계처분을 받은 후 근무성적이 뛰어나고, 능력개발에 힘씀으로써 개전의 정이 있는자는 회사가 징계조치를 해제할 수 있다.

제 83 조(본인에 준하는 징계) 직원의 징계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하여 방조, 공모, 교사 또는 선동을 행하였을 때에는 본인에 준하여 징계한다.

제 84 조(미수) 징계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하여 상황이 중대한 경우에는 그 행위가 미수에 그쳤다 할지라도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다만, 정상참작에 의해서 징계를 경감할 수 있다.

제 85 조(감독 불이행의 소속 장에 대한 징계)
① 직원의 징계 처분된 경우, 소속장의 감독 불이행이 업무상 중대한 해태로 인한 경우에는 소속장도 징계할 수 있다. ② 다만, 그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방지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정상을 참작하여 징계처분을 면제할 수 있다.

제 10 장 보 칙

제 86 조(안전관련 제안 제도)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소속 직원 및 작업장 근로자가 안전을 위한 개선 과제를 제시할 수 있도록 안전관련 제안 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② 안전관리자 및 안전보건담당자는 제 1 항에 따라 제안된 개선과제를 충실히 검토한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 87 조(문서보존연한)
① 대주정공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해당 기간 보존하여야 한다.
1. 산업재해 발생기록 : 3 년
2. 관리책임자·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및 산업보건의의 선임에 관한 서류 : 3 년
3.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록 : 2 년
4. 안전·보건상의 조치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서류 : 3 년
5. 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조사에 관한 서류 : 3 년
6. 작업환경측정에 관한 서류 : 5 년(단,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질은 30 년)
7. 건강진단에 관한 서류 : 3 년
8. 자율검사 프로그램에 따라 실시한 검사 결과에 대한 서류 : 2 년
9. 기타 안전보건에 관련된 일반적인 서류 : 3 년
② 제 1 항에 의해 보존하여야 하는 서류 중 전산 입력 자료가 있을 경우 그 서류를 대신하여 전산 입력 자 료를 보존할 수 있다.

제 88 조(규정의 관리) 안전보건관리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 등 관련 법령에 위배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장의 규모나 특성에 적합하도록 개정할 수 있으며, 법령의 최신 제·개정 내용을 확인하여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별표 1] 조직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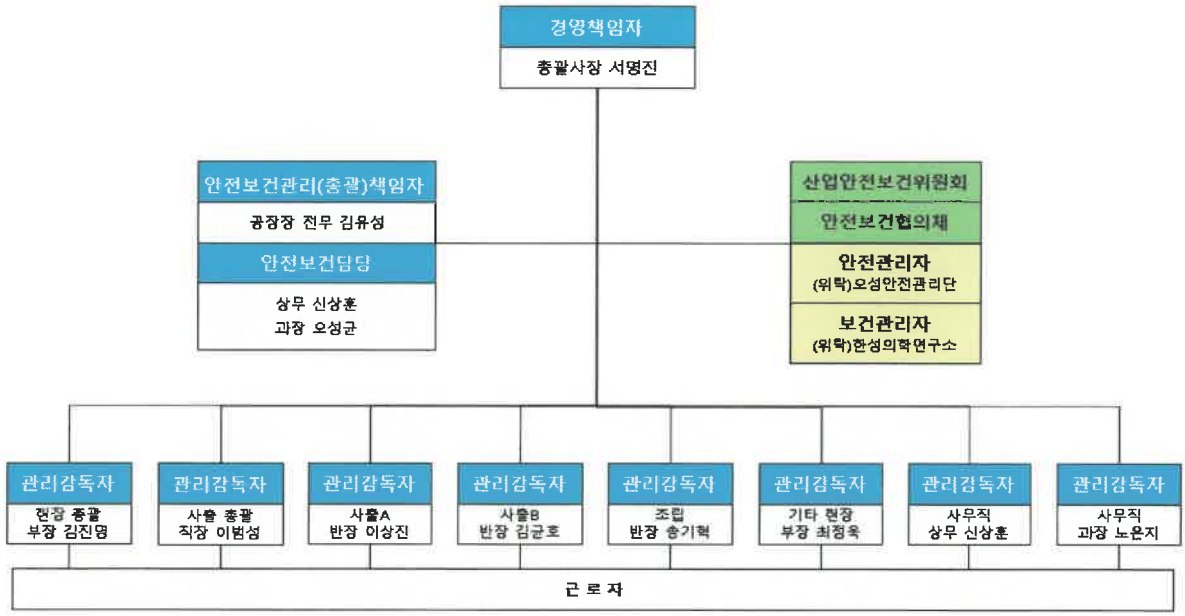

■ 대주정공 화성공장 안전보건관리 조직도

[별표 2] 안전보건관계자의 선임기준 및 직무

체 계	선임 기준	직 무
안전 보건 관리 책임자	▪대상 : 상시근로자 100 인 이상 사업장 ▪자격 - 공장 : 공장장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 15 조	1.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4. 작업환경의 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6. 산업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8.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9.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10. 근로자의 위험 또는 건강장해의 방지에 관한 사항 11.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의 지휘·감독 12. 기타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

체 계	선임 기준	직 무
안전 관리자	▪대상 : 상시근로자 50 인 이상사 업장 또는 도급사업 수급 인 포함 100 인 이상 사 업장 ▪자격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령」 제 17 조 별표 4 또는「기업활동 규제 완화에 관한 특별조 치법」 제 29 조에 따른 겸 직 허용자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 17 조 ※ 상시근로자 50 인 미만 사업장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노사협의체에서 심의·의결 한 업무와 해당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업무 2.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3. 안전인증대상기계 등과 자율안전 확인 대상기계 등 구입 시 적격품의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4. 안전교육계획의 수립 및 안전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5. 사업장 순회점검, 지도 및 조치 건의 6.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분석 및 재발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좌 및 지도·조언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관리·분석을 위한 보좌 및 지도·조언 8.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한 안전에 관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9. 업무수행 내용의 기록·유지 10. 그 밖에 안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보건 관리자	▪대상 : 상시근로자 50 인 이상 사업장 또는 근로자, 파견근로자, 도급사업 수급 인 포함 100 인 이상 사업 장 ▪자격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 21 조 별표 6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 18 조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노사협의체에서 심의·의결한 업무와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업무 2. 안전인증대상기계 등과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 등 중 보건과 관련된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의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3.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4.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또는 비치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5. 산업보건의의 직무 6. 보건교육계획의 수립 및 보건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7.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의료행위(가~마) 8. 전체 환기장치 및 국소 배기장치 등에 관한 설비의 점검과 작업방법의 공학적 개선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9. 사업장 순회점검, 지도 및 조치 건의 10.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분석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좌 및 지도・조언 11.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관리・분석을 위한 보좌 및 지도・조언 12.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한 보건에 관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13. 업무 수행 내용의 기록・유지 14. 그 밖에 보건과 관련된 작업관리 및 작업 환경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사항

체 계	선임 기준	직 무
산업 보건의	▪대상 : 상시근로자 50 인 이상 사 업장중 의사를 보건관리자 로 선임하지 않거나 보건 관리전문기관에 보건관리자 의 업무를 위탁하지 않은 사업장 ▪자격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 30 조▪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 22 조	1. 건강진단실시 결과의 검토 및 그 결과에 따른 작업배치, 작업전환 또는 근로시간의 단축 등 근로자의 건강보호 조치 2. 근로자의 건강장해의 원인조사와 재발방지를 위한 의학적 조치 3. 기타 근로자의 건강유지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의학적 조치에 관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안전 보건 총괄 책임자	▪대상 : 도급사업 시 직원 및 수 급인 근로자를 포함한 상 시근로자가 100 인 이상인 사업 및 공사의 총 공사 금액이 20 억원이상인 건 설업 ▪자격 - 공장 : 공장장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 62 조	1.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2. 작업의 중지 3. 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조치 4.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관계수급인 간의 사용에 관한 협의·조정 및 그 집행의 감독 5. 안전인증대상 기계 등과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 등의 사용 여부 확인
안전 보건 관리 담당자	▪대상 : 하수·폐수 및 분뇨 처리 사업장 중 상시근로자 20 인 이상 50 인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 ▪자격 - 공장 :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 자, 고용노동부에서 인정 하는 안전·보건 교육 이수자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 19 조	1. 안전·보건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조언·지도 2.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조언·지도 3. 작업환경측정 및 개선에 관한 보좌 및 조언· 지도 4. 건강진단에 관한 보좌 및 조언·지도 5.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 산업재해 통계의 기록 및 유지를 위 한 보좌 및 조언·지도 6. 산업안전·보건과 관련된 안전장치 및 보호구구입 시 적격품 선정 에 관한 보좌 및 조언· 지도
관리감 독자	▪대상 : 전 사업장 ▪자격 1.작업을 지휘 감독하고 그 직무를 담당하는 자 2. 현장의 팀장 및 책임자 3. 관리팀장 4. 안전보건담당자	1. 해당 작업과 관련되는 기계・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에 관한 사항 2. 소속된 근로자의 작업복・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사용에 관한 교육・지도 3. 해당작업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 4. 작업장 정리・정돈 및 통로 확보에 대한 확인・감독 5. 다음 사람의 지도・조언에 대한 협조 - 안전관리자 / 보건관리자 / 안전보건관리담당자 / 산업보건의 6. 위험성평가에 관해 유해・위험요인의 파악에 대한 참여 및 개선조치의 시행에 대한 참여 7. 그 밖에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 는 사항

체 계	선임 기준	직 무
관리 감독자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 16 조 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 35 조 별표 2, 별표 3	※ 별표 2 유해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업무 1. 크레인을 사용하는 작업 1) 작업방법과 근로자 배치를 결정하고 그 작업을 지휘하는 일 2) 재료의 결함 유무 또는 기구 및 공구의 기능을 점검하고 불량 품을 제거하는 일 3) 작업 중 안전대 또는 안전모의 착용 상황을 감시하는 일 2. 화물취급작업 1) 작업방법 및 순서를 결정하고 작업을 지휘하는 일 2) 기구 및 공구를 점검하고 불량품을 제거하는 일 3) 그 작업장소에는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 하는 일 4) 로프 등의 채체작업을 할 때에는 하대 위의 화물의 낙하위험 유무를 확인하고 작업의 착수를 지시하는 일 ※ 별표 3 작업시작 전 점검사항 1. 로봇의 작동 범위에서 작업 1) 외부 전선의 피복 또는 외장의 손상 유무 2) 매니퓰레이터 작동의 이상 유무 3) 제동장치 및 비상정지장치의 기능 2. 공기압축기를 가동할 때 1) 공기저장 압력용기의 외관 상태 2) 드레인밸브의 조작 및 배수 3) 압력방출장치의 기능 4) 언로드밸브의 기능 5) 윤활유의 상태 6) 회전부의 덮개 또는 울 7) 그 밖의 연결 부위의 이상 유부 3. 크레인을 사용하여 작업하을 하는 경우 1) 권과방지장치·브레이크·클러치 및 운전장치의 기능 2) 주행로의 상측 및 트롤 리가 횡행하는 레일의 상태 3) 와이어로프가 통하고 있는 곳의 상태 4) 전조등·후미등·방향지시기 및 경보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체 계	선임 기준	직 무
관리 감독자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 16 조 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 35 조 별표 2, 별표 3	4. 양중기의 철구를 사용하여 고리작업을 할 때 1) 와이어로프등의 이상 유무 5. 지게차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1) 제동장치 및 조종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2) 하역장치 및 유압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3) 바퀴의 이상 유무 6. 구내운반차를 사용하여 작업을 할 때 1) 제동장치 및 조종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2) 하역장치 및 유압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3) 바퀴의 이상 유무 4) 전조등·후미등·방향지시기 및 경음기 기능의 이상 유무 5) 충전장치를 포함한 홀더 등의 결함상태의 이상 유무 7. 화물자동차를 사용하는 작업을 하게 할 때 1) 제동장치 및 조종장치의 기능 2) 하역장치 및 유압장치의 기능 3) 바퀴의 이상 유무 8. 컨베이어등을 사용하여 작업을 할 때 1) 원동기 및 풀리 기능의 이상 유무 2) 이탈 등의 방지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3) 비상정지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4) 원동기·회전축·기어 및 풀리 등의 덮개 또는 울 등의 이상 유무 9. 슬링 등을 사용하여 작업을 할 때 1) 훅이 붙어 있는 슬링·와이어슬링 등이 매달린 상태 2) 슬링·와이어슬링 등의 상태(작업시작 전 및 작업 중 수시로 점검)

[별표 3] 법정안전관계자의 선임기준 및 직무

체 계	선임 기준 (관계 법령)	직 무
전기 안전 관리자	「전기안전관리법」 제 22 조, 제 23 조	1. 전기설비의 공사. 유지 및 운용에 관한 업무 및 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안전교육 2. 전기설비의 안전관리를 위한 확인. 점검 및 이에 대한 업무의 감독 3. 전기설비의 운전. 조작 또는 이에 대한 업무의 감독 4.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에 관한 기록 및 그 기록의 보존 5. 공사계획의 인가신청 또는 신고에 필요한 서류의 검토 6. 비상용 예비발전설비의 설치. 변경공사로서 총 공사비가 1 억원 미만인 공사의 감리업무 7. 전기수용설비의 증설 또는 변경공사로서 총 공사비가 5 천만원 미만인 공사의 감리업무 8. 그 밖에 전기안전관리상 필요한 업무
소방 안전 관리자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 24 조, 「공공기관의 소방안전 관리에 관한 규정」 제 5 조	1. 소방계획의 작성 2. 자위소방대의 조직 3.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 관리 4. 소방훈련 및 교육 5. 소방시설 그 밖의 소방관련시설의 유지. 관리 6. 화기취급의 감독 7. 그 밖에 소방안전관리상 필요한 업무
유해 화학 물질 관리자	「화학물질관리법」 제 32 조	1.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준수에 필요한 조치 2. 취급자의 개인보호장구 착용에 필요한 조치 3. 유해화학물질의 진열·보관에 필요한 조치 4. 유해화학물질의 표시에 필요한 조치 5.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 및 관리기준 준수에 필요한 조치 6.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등의 자체 점검에 필요한 조치 7. 수급인의 관리·감독에 필요한 조치 8. 사고대비물질의 관리기준 준수에 필요한 조치 9. 위해관리계획서의 작성·제출에 필요한 조치 10. 화학사고 발생신고 등에 필요한 조치 11. 그 밖에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안전 확보와 위해 방지 등에 필요한 조치
검사 대상 기기 조종사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 40 조	1. 검사대상기기의 안전관리 및 위해방지 2. 그 밖의 위해방지 조치

체 계	선임 기준 (관계 법령)	직 무
고압 가스 안전 관리자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 15 조	1. 시설・용기등 또는 작업과정의 안전유지 2.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지휘・감독 3. 그 밖의 위해방지 조치 4. 안전관리규정의 시행 및 그 기록의 작성・보존
도시 가스 안전 관리자	「도시가스사업법」 제 29 조	1. 가스사용시설의 안전유지 2. 정기검사, 수시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시설의 개선 3.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지휘・감독 4. 안전관리규정 실시기록의 작성・보존 5. 순회점검, 구조물의 관리, 원격감시시스템의 관리, 검사업무 및 안전에 대한 비상계획의 수립・관리 6. 그 밖의 위해 방지 조치
승강기 안전 관리자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 29 조	1. 승강기 운행관리 규정의 작성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2. 승강기의 고장·수리 등에 관한 기록 유지에 관한 사항 3. 승강기 사고 발생에 대비한 비상연락망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승강기 인명사고 시 긴급조치를 위한 구급 체제의 구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승강기의 중대한 사고 및 중대한 고장 시 사고 및 고장 보고에 관한 사항 6. 승강기 표준부착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 7. 승강기 비상열쇠의 관리에 관한 사항

[별표 4] 안전보건교육 대상 및 시간

교육과정	교육대상	교육시간
가. 정기교육	사무직종사 근로자	매반기 6 시간 이상
	사무직종사 근로자 외의 근로자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매반기 6 시간 이상
	사무직종사 근로자 외의 근로자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외의 근로자)	매반기 12 시간 이상
나. 신규채용 시 교육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	연간 16 시간 이상
	일용근로자 및 근로계약기간이 1 주일 이하인 기간제근로자	1 시간 이상
	근로계약기간이 1 주일 초과 1 개월 이하인 기간제근로자	4 시간 이상
	그 밖의 근로자	8 시간 이상
다.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2 시간 이상
	일용근로자	1 시간 이상
라. 특별교육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2 시간 이상
	시행규칙 별표 5 제 1 호 라목 각 호의(제 40 호는 제외한다)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일용 근로자	2 시간 이상
마. 물질안전보건자료 교육	시행규칙 별표 5 제 1 호 라목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 16 시간 이상 - 2 시간 이상 (단기간·간헐적 작업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 내에 이를 취급하는 근로자	

* 단기간 작업 : 2 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1 회성 작업, 간헐적 작업 : 연간 총 작업일수가 60 일을 초과 하지 않는 작업

※ 전년도 무재해 사업장 : 제 21 조(정기안전보건교육) 교육시간의 1/2 이상 실시가능
※ 관리감독자 교육 이수 시 : 해당연도 제 18 조(정기안전보건교육) 면제 가능
※ 특별안전보건교육 이수 시 : 제 18, 제 19 조에 의한 교육 면제 가능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직무교육

교육 과정		교육 시간	교육 기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신규	6 시간 이상	선임 후 3 개월 이내
	보수	6 시간 이상	신규 및 보수 교육 후 2 년 이내
안전관리자	신규	34 시간 이상	선임 후 3 개월 이내
	보수	24 시간 이상	신규 및 보수 교육 후 2 년 이내
보건관리자	신규	34 시간 이상	선임 후 3 개월 이내
	보수	24 시간 이상	신규 및 보수 교육 후 2 년 이내

[별표 5] 교육과정별 교육내용

1.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대 상	교육 내용
가. 정기교육	◦ 산업안전 및 사고예방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위험성평가에 관한 사항 ◦ 유해· 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에 관한 사항 ◦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나. 채용 시 교육 및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 산업안전 및 사고예방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위험성평가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에 관한 사항 ◦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기계· 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 ◦ 작업 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 ◦ 정리정돈 및 청소에 관한 사항 ◦ 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다. 특별교육 대상 작업별 교육	◦ 공통내용 : 채용 시의 교육 및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내용 ◦ 개별내용 : 시행규칙 별표 7 제 1 호 라목 각 호의 내용

2.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

대 상	교육 내용
가. 정기교육	◦ 산업안전 및 사고예방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위험성평가에 관한 사항 ◦ 유해· 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에 관한 사항 ◦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작업공정의 유해·위험과 재해 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 사업장 내 안전보건관리체제 및 안전·보건조치 현황에 관한 사항 ◦ 표준안전 작업방법 결정 및 지도·감독 요령에 관한 사항 ◦ 현장근로자와의 의사소통능력 및 강의 능력 등 안전보건교육 능력 배양에 관한 사항 ◦ 비상시 또는 재해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 그 밖의 관리감독자의 직무에 관한 사항
나. 채용 시 교육 및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 산업안전 및 사고예방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위험성평가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에 관한 사항 ◦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기계· 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 ◦ 작업 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 ◦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 사업장 내 안전보건관리체제 및 안전·보건조치 현황에 관한 사항 ◦ 표준안전 작업방법 결정 및 지도·감독 요령에 관한 사항 ◦ 비상시 또는 재해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 그 밖의 관리감독자의 직무에 관한 사항
다. 특별교육 대상 작업별 교육	◦ 공통내용 : 채용 시의 교육 및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내용 ◦ 개별내용 : 시행규칙 별표 7 제 1 호 라목 각 호의 내용

[별표 6] 위험작업 종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 99 조)

① 법 제 139 조제 1 항에서 "높은 기압에서 하는 작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이란 잠함(潛函) 또는 잠수 작업 등 높은 기압에서 하는 작업을 말한다.

② 제 1 항에 따른 작업에서 잠함·잠수 작업시간, 가압·감압방법 등 해당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 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③ 법 제 139 조제 2 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작업을 말한다.

1. 갱(坑) 내에서 하는 작업
2. 다량의 고열물체를 취급하는 작업과 현저히 덥고 뜨거운 장소에서 하는 작업
3. 다량의 저온물체를 취급하는 작업과 현저히 춥고 차가운 장소에서 하는 작업₩
4. 라듐방사선이나 엑스선, 그 밖의 유해 방사선을 취급하는 작업
5. 유리·흙·돌·광물의 먼지가 심하게 날리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
6. 강렬한 소음이 발생하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
7. 착암기(바위에 구멍을 뚫는 기계) 등에 의하여 신체에 강렬한 진동을 주는 작업
8. 인력(人力)으로 중량물을 취급하는 작업
9. 납·수은·크롬·망간·카드뮴 등의 중금속 또는 이황화탄소·유기용제,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 로 정하는 특정 화학물질의 먼지·증기 또는 가스가 많이 발생하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

[별표 7] 사고보고 계통 예시) 화성공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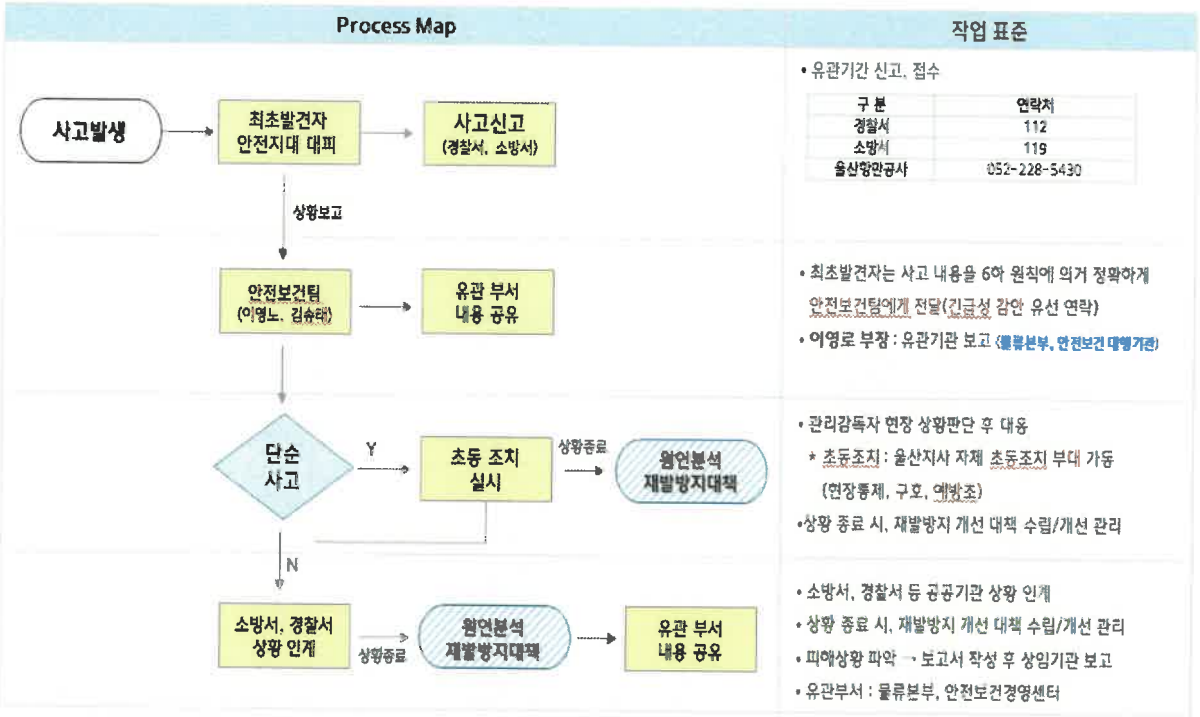

[별표 8] 안전보호구 지급관리기준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 32 조(보호구의 지급 등)

대 상	지급	지급 주기
안전모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	
안전대	높이 또는 깊이 2 미터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	
안전화	물체의 낙하・충격, 물체에의 끼임, 감전 또는 정전기의 대전(帶電)에 의한 위험이 있는 작업	
보안경	물체가 흩날릴 위험이 있는 작업	
보안면	용접 시 불꽃이나 물체가 흩날릴 위험이 있는 작업	
절연용 보호구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작업	
방열복	고열에 의한 화상 등의 위험이 있는 작업	
방진마스크	선창 등에서 분진(粉塵)이 심하게 발생하는 하역작업	
방한모・방한복・방한화・방한장갑	섭씨 영하 18 도 이하인 급냉동어창에서 하는 하역작업	
각반	무릎을 부딪히거나 바지가 물체에 걸려 넘어질 위험이 많은 작업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 33 조(보호구의 관리)

① 사업주는 이 규칙에 따라 보호구를 지급하는 경우 상시 점검하여 이상이 있는 것은 수리하거나 다 른 것으로 교환해 주는 등 늘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청결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결을 유지하는 안전화, 안전모, 보안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사업주는 방진마스크의 필터 등을 언제나 교환할 수 있도록 충분한 양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별표 9] 안전보건표지

1 금지표기	101 출입금지	102 보행금지	103 차량통행금지	104 사용금지	105 탑승금지	106 금 연
107 화기금지	108 물체이동 금 지	2 경고표지	201 인화성물질 경 고	202 산화성물질 경 고	203 폭발성물질 경 고	204 급성독성 물질경고
205 부식성물질 경 고	206 방화성물질 경 고	207 고압전기 경 고	208 메탈린물체 경 고	209 낙화물 경 고	210 고온경고	210-1 저온경고
211 몰균형삼실 경 고	212 레이저광선 경 고	213 발암성·변이원성·생식독성·전신독성 호흡기과민성 물질 경고	214 위험장소 경 고	3 지시표지	301 보안경 착 용	302 방독마스크 착 용
303 방진마스크 착 용	304 보안면 착 용	305 안전모 착 용	306 귀마개 착 용	307 안전화 착 용	308 안전장갑 착 용	309 안전복 착 용
4 안내표지	401 녹십자 표 지	402 응급구호 표 지	402-1 들 것	402-2 세안장치	403 비 상 구	403-1 좌측비상구
403-2 우측비상구	5 문자추가시 범례		▶내자신의 건강과 복지를 위하여 안전을 늘 생각한다. ▶내가정의 행복과 화목을 위하여 안전을 늘 생각한다. ▶내자신의 실수로써 동료를 해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안전을 늘 생각한다. ▶내자신이 일으킨 사고로써 모는 회사의 재산과 과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을 늘 생각한다. ▶내자신의 방심과 불안전한 행동이 조국의 번영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안전을 늘 생각한다.			

[별표 10] 안전보건 평가·점검 계획

NO	업 무 명	세 부 내 용	대 상	시행시기	주 체	비 고
1	안전보건계획 이사회 보고 (대표이사→이사회)	• 보고내용 1.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경영방침 2. 안전보건관리 조직의 구성, 인원 및 역할 3. 안전보건관련 예산 및 시설현황 4.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전년도 활동실적 및 다음년도 활동계획	전지사	1~2월 (연 1회)	안전보건 경영센터	산안법 제14조
2	위험성평가 결과보고	• 보고사항 1. 정기/수시 위험성평가 실시결과 : 계획수립여부 -. 정기 (연1회) / 수시 (사유발생시) 2. 평가시 근로자 참여 여부 3. 위험성등급별 관리(개선)계획 및 실적 등	전지사	5월, 10월 (연2회)		중처법 제4조
3	안전직책자 업무수행 평가	• 대상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관리감독자 • 평가기준 수립 및 평가	전지사	5월, 10월 (연2회) 2월	책임자: 안전보건경영센터 / 감독자: 지사 안전보건 경영센터	
4	산안보 / 안보협의체 실시 결과 점검 및 결과보고	• 점검표 작성 • 산안보 / 안전협의체 실시 결과점검	전지사	2월 4월, 8월 (연2회)	안전보건 경영센터	

NO	업 무 명	세 부 내 용	대 상	시행시기	주 체	비 고
5	중대산업재해 대비 매뉴얼 작성 및 조치 여부 점검 결과보고	• 매뉴얼 제정(각목 조치) 가. 작업중지, 근로자 대피, 위험요인 제거 등 대응조치 나. 중대산업재해를 입은 사람 구호조치 다. 추가 피해방지 조치 등 • 매뉴얼 이행여부 점검 및 보고	전지사	3월 4월, 8월 (연2회)	각 지사 / 사업부 안전보건 경영센터	중처법 제5조
6	도급·용역·위탁 기준과 절차수립 및 이행여부 점검결과보고	• 기준과 절차수립 가.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은자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기준 및 절차 나.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은자의 안전보건을 위한 관리비용에 관한 기준 • 이행여부 점검결과 보고	전지사	2 ~ 3월 6월, 9월 (연2회)	각 지사 / 사업부 안전보건 경영센터	중처법 제4조
7	안전보건 관계 법령 의무이행 실태 점검 및 결과보고	• 법적 요구사항 이행실태 점검 및 보고	전지사	5월, 9월 (연2회)	안전보건 경영센터	

NO	업 무 명	세 부 내 용	대 상	시행시기	주 체	비 고
8	유해위험작업 안전보건교육 실시여부 점검 및 보고	• 특별교육 대상선정 - 총40개 단위작업 中 해당작업 • 교육시간 준수 :16시간 이상 • 점검기준 수립 및 점검결과 보고	전지사	5월, 9월 (연2회)	각 지사 안전보건 경영센터	중처법 제4조
9	자체안전관리계획서 이행실태 점검	• 계획서 이행 점검표 작성 • 이행실태 점검 및 결과보고	인천지사 외 7개지사	연중 (연1회)	안전보건 경영센터	항만 안전 특별법 제9조
10	안전보건관리 수준 종합평가	• 상기 #2~#8번까지 점검 및 평가결과 종합보고 - 안전사고(화재포함) 발생현황 평가포함	전지사	11월 (연1회)		중처법 제4조

정기안전보건교육 일지

결재	담당	검토	확인	사업부장

작성일자 : 년 월 일 작성자 :

교육 · 훈련명				
실시자 및 장소	성 명		직 책	교육 장소
			-	-
교육 일시	교육 일자		교육 시간	교육 방법
대상 인원	구 분	계	남	여
	교육 대상자 수	-		
	교육 실시자 수	-		
	교육 미참석 사유			
내 용				

교육 미참석자 추가교육 확인

No	성 명	서 명	교육일(교육시간)	교육 내용

◈ 추가 교육일시 및 본인 서명 반드시 기록 할 것 ※ 추가교육 조치자 : (인)

[별지 제 1 호서식] 안전보건교육일지

[별지 제 2 호서식] 사고발생보고서

▣ 사고 보고서 (1)

" 사 고 제 목 (사고내역요약) "

사고개요	▪ 일 시 : 2022.00.00 00:00 ▪ 장 소 :			▪ 소 속 : ▪ 사고유형 :		
사 고 자 인적사항	성명	○○○	연령	○○세 ('○○년생)	총 근속 년수	○년 ○○개월
	성별	남 / 여	현직종	○○○○○○	("현직종 근무년수")	
기 인 물	▪					
사고내용	▪ ▪ ▪ ▪					
피해 현황 인적	▪ 상해부위 : ▪ 상해종류 :			▪ 상해정도 : ▪ 치료계획 :		
피해 현황 물적	▪ 피해부분 : ▪ 피해정도 :			▪ 추정피해액 :	천원	
처리계획	▪ ▪					

사고현장 사진

〈 설명 〉

〈 설명 〉

[별지 제 3 호서식] 안전사고조사 보고서

▣ 사고 보고서 (2)

일반 개요

작업사항

▪ 작 업 명 :
▪ 주요 작업내용
1)
2)
▪ 작업주관파트 :
▪ 작업 인원 :

작업 구분	계획(일상) / 비 계획	작업 수행	▪ 인력 / 인력 + 장비 ▪ 인력 + 기계·기구
작업 주기	상시 / 정기 / 수시	작업 종류	고정 / 보수(수리) / 기타

▪ 작업표준 : "준수 / 미준수 or 작업표준 미제정"
▪ 작업지휘(감독)계통 : "사고자 → ○○○ → ○○○ → ○○○"

안전사항

▪ 인원현황 : 총 명 (관리 / 기능)
▪ 사고현황 (2022년)

구 분	인적 사고			물 적 사 고	
	휴업 3일이상	휴업 3일이만	무재해기간	보험처리	보험미처리
건 수	("재해율 %")				

표준작업 순서

사고작업 순서

사고발생 공정 (작업)

[별지 제 3 의 2 호서식] 재해자, 목격자 진술서

▣ 사고 보고서 (5)

사고관련자 경위서 ("작성대상 : 사고자 / 목격자 / 관리감독자")

경 위 서			
소속			
직종		직책	
성명		입사일	

작 성 일 : 2022. . .

작 성 자 : ㅇ ㅇ ㅇ (서명)

2 면

[별지 제 3 의 3 호서식] 재발방지대책

▣ 사고 보고서 (3)

사고원인

		참고 자료
직접 원인	"불안전 행동 / 불안전 상태"	"사진/도면/도해 설명자료"
간접 원인	"교육적 / 관리적 / 기술적"	

▣ 사고 보고서 (4)

재발방지대책 (동종 / 유사사례)

구분	항목	세 부 내 용	비 고
		만료일자	
1			
2			
3			
4			
5			

대책 자료

"사진/도면/도해 설명자료"

[별지 4호서식] 작업중지 요청 기록대장

NO	신고인 (소속)	중지 내용	신고 일시	처리 내용	완료 여부	처리자	비고

[별지 5호서식] 안전보호구 지급대장

보호구 지급 대장

부서명	
작성자	
작성일자	

불출품	
불출일자	
인수자	
지급자	

1. 본인은 금일 수령한 보호구를 안전규칙 제28조 2항(보호구 착용준수)에 의거 착용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겠으며, 보호구 미착용으로 인한 귀사의 제반조치 사항에 따르겠음.

○ 보호구 수령자 인적사항 및 확인 서명

지급 품목	모델 번호	안전 인증번호	수 량	이 름	서 명